

무지에의 호소는 오류인가?

최 훈(세종대)

【요약문】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무차별적으로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는 그 무지가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가, 그리고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논증이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쓰이고 있느냐에 의존한다.

【주요어】 무지에의 호소, 오류, 입증, 입증의 부담

1. 머리말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모르는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 참 또는 거짓임을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주장의 참 또는 거짓을 추론하는 것을 무지에의 호소(argumentum ad ignorantiam)라고 한다. 무지에의 호소는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로 되어 있다.

- ① P라는[가 아니라]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 ② 따라서 P가 아니다[이다].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무지에의 호소를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전제인 ①은 우리가 P(또는 P가 아님)와 관련해서 현재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사실이고 ②는 P(또는 P가 아님) 자체이므로 ①은 ②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오류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참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바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 안 되는 것뿐이다. 우리의 무지는 지식의 한계와는 관련이 있지만 지식의 대상인 사실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무지에서는 무지만 나올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무지에 호소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오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령 김광수 교수의 『논리와 비판

적 사고』¹⁾는 무지에의 호소의 보기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보기 1. 아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그는 신의 존재 증명이 "이런 논리적 형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신의 부존재 증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기 2.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2도 보기 1처럼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광수 교수는 보기 2도 오류인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단지 보기 1이 가능하다면 그것과 결론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도 역시 가능하므로 보기 1이 "논리적 형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할 뿐이다. 한편 하병학 교수는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에서 보기 1과 보기 2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정말로 보기 1과 보기 2 모두 오류일까?

탁석산 박사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³⁾에서 '무지 논증의 오류'라는 이름으로 다음 논증이 오류라고 소개한다.

보기 3.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외계인은 존재한다.

그는 김광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같은 형식인 다음과 같은 논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논증이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기 4.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탁석산 박사는 보기 4가 분명히 보기 3처럼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 부정을 부정하는 소극적인 근거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거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보기들도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로 소개하고 있다.

1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전정관 (철학과 현실사, 1995), 414-5쪽.

2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철학과현실사, 2000), 230쪽.

3 탁석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책세상, 2001), 128-130쪽.

보기 5. 내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지난 석 달 동안 없었다. 따라서 너는 날 좋아한다.

보기 6. 우리 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우리 당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기 4, 보기 5, 보기 6이 무지애 호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잡아 오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글에서 무지애 호소하는 것이 많은 논리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것처럼 오류인지 살펴볼 것이다. 나는 무지애의 호소가 오류인 경우는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제한 조건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형식적인 조건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논증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결국 무지애 호소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겠다. 논의의 특성상 많은 보기를 이용할 것이다.

2. 철저한 입증 과정이 있었는가?

몇몇 논리학 교과서는 무지애의 호소가 무차별적으로 오류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코피와 코헨은 『논리학 입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갖가지 방식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이후에도 확실한 증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사실들이 실제적인 논증적 힘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흔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새로운 약품은 오랜 기간 동안 시험 대상자인 쥐나 혹은 다른 동물에게 주입된다. 그 동물들에게 유독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에게도 그 약이 유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로 채택된다.⁴⁾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증거가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노력 끝에 얻어진 것이라면 올바른 논증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보자.

보기 7. 환각제 엑스터시 복용설이 나돌자 지난 11일 검찰에 자진 출두, 수사를 자청했

4 어빙 코피·칼 코헨, 『논리학 입문』 제10판 (박만준 외 옮김, 경문사, 2000), 163쪽.

던 텔런트 겸 모델 김정은(26)씨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검 마약 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모발 및 체모 감식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⁵⁾

김정은씨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가 엑스터시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정은씨가 엑스터시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틀림 없이 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지검 마약수사부가 유능한 기관이고 모발 검사가 신빙성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믿으며 모발 검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론은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고 공정하며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거기에서 P가 아니라는[P라는] 결론이 올바르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철저한 증거 조사와 확인이라는 논증의 기본 원리는 무지에의 호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코피와 코헨은 보기 7과 같은 경우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의 형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무지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확신,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필시 몇 가지 검증을 거쳐 나타난 결과일 것이라는 확신과 지식이다.⁶⁾

그들은 보기 7과 같은 사례는 무지에 호소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거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의 예외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논증이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음'에 주목하는 것이지 그 알려지지 않음, 곧 무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우리가 모르든 아니면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모르든간에 무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철저한 조사 끝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이라면 단순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비록 지식의 양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 종류에서는 같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부정적인 지식이다. 따라서 보기 7도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한 가지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오류가 아닐

5 「문화일보」 2002년 3월 16일치.

6 「논리학 입문」, 164쪽. Gary N. Curtis도 이 같은 경우를 '자율-인식적'이라고 부르면서 무지에의 호소와 구분된다고 말한다(<http://gncurtis.home.texas.net/ignorant.html>).

뿐이다.

이제 무지예의 호소는 언제나 오류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일 때만 오류라고 평가해야 한다.

- ①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 ④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는 철저하고 공정하며 충분한 입증 과정이 없었다.
- ② 따라서 P가 아니다[이다].⁷⁾

무지예의 호소가 오류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제한하는 데에는 만약 P라면 P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씨가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텐데 실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엑스터시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지예의 호소는 후건부정식(modus tollens)의 형식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라면[가 아니라면]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을 것이다.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P가 아니다[이다].

이 후건부정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무지예의 호소가 오류라고 볼 이유는 없어진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류라고 볼 수 있는 보기 1과 보기 3은 역시 후건부정식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왜 오류일까? 가령 보기 1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을 것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이 후건부정식이 애매어(equivocation)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후건부정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전제에서 '알려져 있다'는

7 ㉠, ㉡ 등은 숨은 전제 또는 숨은 결론을 뜻한다. 박정하, 장은주, 최훈, 『대학인을 위한 논술: 이론편』 (세종서적, 2002)을 보라.

철저하고 공정하며 충분한 과정을 통해 알려졌다는 뜻인데 두번째 전제에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첫번째 전제의 '앎'과 두번째 전제의 '앎'이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보기 1은 무지에의 호소이기 때문에 오류인 것이 아니라 애매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 형식이 기본적으로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보기 6도 정말로 오류인가 검토해 보자. 우리 당의 지지도가 정말로 떨어졌는지 철저하고 공정하게 충분히 조사했는가? 각종 여론조사와 지구당의 여론수집이 철저하고 충분히 이루어졌고 언론의 논조도 우리 당에 부정적이지 않다면 우리 당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잘못이 있을까? 따라서 우리 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전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느냐는 상황에 따라 이 논증은 좋은 논증이 되기도 하고 오류가 되기도 한다. 그런 상황의 검토 없이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오류라고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오류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지에의 호소가 이런 애매어의 오류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후건부정식으로 해석된 무지에의 호소 논증에서 첫번째 전제는 보통 '인식적 닫힘'(epistemic closure)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⁸⁾ 내 지식이 분명하게 닫혀져 있다면 P가 내 지식 안에 없는 경우에는 P가 거짓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가령 만약 비가 내린다면 내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비가 내린다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인식적 닫힘 원리는 꽤 강한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인 모든 명제가 내 지식 안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번째 전제의 앎은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앎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지식에서의 앎은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앎이다. 참인 명제도 실제로 나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지에의 호소를 후건부정식으로 해석하면 애초에 애매어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⁹⁾ 무지에의 호소를 연역 논증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오류이다.

8 Douglas Walton, "Nonfallacious Arguments from Ignoranc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9 (1992), 381-387쪽과 을 보라. Gary N. Curtis는 이 원리를 '닫힌 세계 가정'이라고 부른다 (<http://gncurtis.home.texas.net/ignorant.html>).

9 Douglas Walton은 "Profiles of Dialogue for Evaluating Arguments from Ignorance", *Argumentation* 13(1999): 53-71쪽에서 다른 의미에서 무지에의 호소가 후건부정식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무지에의 호소가 후건부정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건문이 실질적(진리함수적) 조건문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후건부정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임을 밝혀내는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첫번째 전제의 옳과 두번째 전제의 옳의 간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인식적 단합 원리를 만족하는 것은 신적인 관점에서나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철저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꽤 근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첫번째 전제의 옳과 두번째 전제의 옳의 의미 폭을 상당히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소리가 들릴 텐데, 비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에서처럼 애초에 첫번째 전제가 그리 높지 않은 이상적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첫번째 옳과 두번째 옳의 간격은 좁혀질 것이다. 그러면 비록 무지에의 호소는 연역적으로는 부당한 논증이지만 귀납적으로는 개연성이 꽤 높은 논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개연성은 조사하고 철저하고 충분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결국 무지에의 호소는 논증에서 요구하는 옳이 어떤 옳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무지가 밝혀졌느냐는 맥락에 따라 그 논증의 오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 무지에 호소했다고 해서 싸잡아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보기 5를 보자. 나는 네가 날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지난 석 달 동안 철저하게 조사했다. (석 달은 그런 것을 조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개입한다. 네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증거든 좋아하지 않는 증거든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지 않는다'의 모순 개념은 '좋아한다'가 아님을 잊지 말아라. 따라서 네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너는 날 좋아한다"가 아니라 "너는 나한테 무관심하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본다면 보기 5도 무지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인 것이 아니라 일상어의 미묘한 차이를 오해했기 때문에 오류인 것이다.

3.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보기 2를 생각해 보자.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다고 해 보자. 우리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 신 존재 증명 사례를 몇 가지 알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아무도 신 존재 증명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신 존재 증명을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신 존재 증명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보

기 2는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일 제한 조건 ㉑를 만족했으므로 오류일까?

우리가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귀신, UFO, 신, 외계인, 기(氣), 텔레파시, 운회 등에 대해서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자주 쓰인다. 이런 것들을 X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X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X는 있다

와 같은 식이다. 이것은 분명히 오류이다. 왜냐하면 X가 없다는 것을 철저한 조사 끝에 결론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의 논증도 오류일까? 곧

지금까지 X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X는 없다

도 그 꼴로 봐서는 무지에 호소하고 있고 X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한 것도 아닌데 역시 오류일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부담(burden of proof)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져 보아야 한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귀신이 있음을 보여줄 입증의 부담이 있을까, 아니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귀신이 없음을 보여줄 입증의 부담이 있을까?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앞의 사람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 상식적인 현대인들은 귀신이나 텔레파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존재 입증의 해야 할 부담을 진다. 입증의 부담이 없는 쪽에서 X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X가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무지에 호소하는 것이 정당한 논증 방법이다. 따라서 보기 2는 비록 무지에 호소하고 있고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오류는 아니다. 입증의 부담은 신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지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보자.

갑: 나는 A라고 생각해.

을: 너는 왜 A라고 생각하니?

갑: 너는 왜 A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대화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 누군가 입증의 부담을 져야 할까? 대체로 새로운 주장을 먼저 제기해서 논쟁을 일으킨 쪽에서 입증의 부담을 진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갖 주장들로 가득찰 것이다. 먼저 주장을 제기한 쪽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오히려 내가 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느냐고 반문한다면 입증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 귀신, UFO, 신, 외계인, 기(氣), 텔레파시, 윤회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히틀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아마존 정글 속에서 비밀결사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엔벤에 만 년 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할 부담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넘쳐 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증의 부담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무지에 호소해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원고쪽에 입증의 부담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재판을 청구했다면,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과 빌려 준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은 내가 입증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다.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정에서는 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 또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할 부담이 없다. 따라서

보기 8. 피고에게 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무죄다

라는 논증은 오류가 아니다.

코피와 코헨을 비롯해서 몇몇 논리학 교과서는 법정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¹¹⁾ 그러나 보기 8에서 쓰이는 '무죄'라는 용어는 피

10 법정에서의 입증의 부담에 대해서는 Bruce N.Waller, *Critical Thinking: Consider the Verdict*, 4th ed.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2001), 5장, A. A. S. Zuckerman, *The Principles of Criminal Evidence* (Oxford: Clarendon Press, 1989), 8-9장을 보라.

고가 정말로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 논증에서 무죄라는 것은 피고가 기소된 행동을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기소 내용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만을 뜻한다.¹²⁾ 그래서 매시(Gerald Massey)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코피는 무죄(innocence)와 법적인 무죄(legal innocence)를 헷갈리고 있다. 외관상 잘못 같이 보이는 것(apparent mistake)이 잘못(mistake)을 함축하지 않는 것처럼 법적인 무죄는 무죄를 함축하지 않는다.¹³⁾

분명히 법적인 무죄와 무죄는 구분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적인 무죄는 피고가 기소된 행동을 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나 매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코피와 코헨이 이 차이를 몰랐을까?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코피와 코헨도 "이러한 무지에의 호소는 상대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공할 수 있지만, 다른 문맥에서 보면 이러한 호소는 분명히 무지에 의거한 오류이다"¹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무죄와 법적인 무죄를 구분해서 생각한다고 봐야 한다.

보기 8의 '무죄'가 전문적인 의미라면 보기 8은 사실은 다음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기 8*. 피고에게 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의 형식과는 다르다. 무지에의 호소는 전제와 결론에서 서로 모순 개념, 아니면 적어도 대립되는 개념을 제시해야 하는데¹⁵⁾ 보기 8은 엄격하게 보면 같은 개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것을 굳이 무지에 호소하는 것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11 코피, 코헨, 『논리학 입문』, 164쪽, 이윤일, 『논리로 생각하기, 논리로 말하기』 (씨엘, 1999).

12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T. Edward Damer, *Attacking Faulty Reasoning*, 4th ed. (Belmont: Wadsworth Pub.Co., 2001), 136쪽을 보라.

13 Gerald Massey, "The Fallacy Behind Fallacie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4 (1981), 491 쪽. 원문 강조. Massey는 Copi의 『논리학 입문』, 4판(1972)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14 『논리학 입문』, 164쪽.

15 서로 대립하는 주장과 모순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리교육연구실 위음, 『실용논리학 입문』 (천지, 1997), 3장을 보라.

그러나 법정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주장은 분명히 오류이다.

보기 9. 피고에게 죄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유죄다

분명히 법정에서 입증의 부담은 기소를 하는 검사쪽에 있는데 그 쪽에서 무지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이다. 사실 보기 9가 오류인 것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 형식과 일치하느냐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줘야만 한다. 피고에게 죄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가 유죄라는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지 결코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보기 9가 오류인 것은 형식적인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유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설명을 염두에 두고 다음 보기를 살펴 보자.

토마 페레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서기가 그를 증인대에까지 부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특히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고, 나는 장례식 날 한 번 만났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그 날 너무 슬퍼서 아무 것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나에게서는 매우 슬픈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절까지 했지요. 그래서 저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차석 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는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사가,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화를 내며 지나쳐 보이리 만큼 목청을 돋구어서, 페레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는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¹⁶⁾

검사는 토마 페레의 증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논증을 하고 있다.

보기 10. 페레는 피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피르소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사는 피르소에게 불리한 증언을 유도한 것이다. 한편 피르소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반박하고 있다.

16 카뮈, 『이방인』. 김광수, 『탐구의 논리』 (철학과현실사, 1997), 176쪽에서 재인용.

보기 11. 페레는 피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광수 교수는 이 두 논증이 모두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⁷⁾ 그렇다고 해서 배심원들은 어느 논증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기 10과 보기 11은 법정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 더 그럴 듯해 보이는가 또는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기 10이 더 그럴 듯할지도 모른다. 보기 11은 순전히 보기 10에 맞대응하기 위해 나온 논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긋나 같다. 그러나 배심원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큰가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소 내용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가이다. 그러므로 두 진술에 똑 같은 비중을 두고 양비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비록 보기 10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가능성만으로는 기소 내용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보기 10은 보기 11보다 조금 더 그럴듯하면 안 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측은 보기 11이 보기 10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것을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검사측의 기소 내용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보기 11은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 10과 보기 11을 무지에의 호소라는 형식적 관점에서 똑같이 오류라고 보는 것은 법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비록 보기 10과 보기 11이 형식적으로는 무지에의 호소 논증일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피고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기 10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잘못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법정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의 무지에의 호소와 사뭇 다르다. 피고측이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 형식과 다르기 때문이고 원고측이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오류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권의 이유에서 오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입증의 부담이 있는 사람이 무지에 호소해서 논증을 하면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무지에의 호소는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일 때만 오류라고 평가해야 한다.

17 「탐구의 논리」, 177-8쪽. 김광수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두 논증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기 11은 보기 10의 반증례로 제시되었다고 말한다.

- ①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 ④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는 철저하고 공정하며 충분한 입증 과정이 없었다.
- ⑥ P임[가 아님]을 입증할 부담이 ①을 주장한 사람에게 있다.
- ② 따라서 P가 아니다[이다].

4. 상황 의존적인 무지에의 호소

입증의 부담은 좀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도 된다. 군대에서 사격 연습을 끝냈을 때 탄창을 제거한 다음 허공을 향해 확인 발사를 한다. 약실 속에 발사 안 된 탄알이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허공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보기 12. 나는 이 총에 총알이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따라서 총알이 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 옳다.¹⁸⁾

이 경우 분명히 무지에 호소하고 있지만 오류 논증은 아니다. 나는 이 총에 총알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총알이 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옳다. 보통의 경우 무기나 위험한 장비를 다룰 때 안전이 가장 우선시된다. 그래서 총에 총알이 들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총알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며 또 위험한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그 장비에 어딘가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 둘다러도 두드려 보고 건너지는데 하물며 무기와 위험한 장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입증의 부담이 없이 무지에 호소하고 있는 보기 12는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입증의 부담은 안전성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보기 12가 오류가 되는 상황도 있다. 월튼(Douglas N. Walton)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고 있다.¹⁹⁾ 한 병사가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총에 총알이 들어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총알이 들어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18 Douglas N. Walton, *Informal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46쪽과 Bruce N. Waller, *Critical Thinking*, 51쪽에 비슷한 보기가 있다. 특히 Waller는 1986년의 챌린저 우주선 폭발 사건에서 O링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한 덕분에 일곱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19 *Informal Logic*, 46-7쪽

일단 총알이 없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는 게 현명하다. 그때는 그것이 안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기 12처럼 논증하는 것은 오류이다. 같은 논증이 상황에 따라 올바른 논증이 되기도 하고 오류 논증이 되기도 한다.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상당히 맥락에 의존하며 따라서 그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다.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²⁰⁾ 앞에서 대체로 먼저 주장을 제기한 쪽이나 뭔가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고 했지만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그런 결정에는 형식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고려가 더 중요하게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마녀나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쪽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 중 어디에 입증의 부담이 있는지는 500년 전과 지금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다. 정치적 또는 역사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입증의 부담도 옮겨간다. 성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보기 13. 누가 아내를 맞아 한 자리에 들고는 싫어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 하고 누명을 씌워 고발했을 경우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²¹⁾

왜 고발을 당한 여자쪽이 처녀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고발을 한 쪽에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기 13은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었던 고대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현대에는 어렵도 없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이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제조사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안 될까? 아니면 이 상품이 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소비자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한 때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존중하여 입증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증의 부담이 제조사에게 옮겨가는 추세이다. 비판자들에게 신기술의 위험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신기술 개발자들에게 안전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우선 신기술의 위험성을 입증하기에는

20 입증의 부담에 대한 논의는 Douglas N. Walton, *Arguments from Ignoranc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7장과 Richard H. Gaskins, *Burdens of Proof in Modern Discour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를 보라.

21 『공동번역성서』 (대한성서공회, 1977), 신명기 22, 13-15.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상품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제조사가 스스로 그 상품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덕분에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된 덕분일 것이다. 소비자의 힘이 입증의 부담을 넘겨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유전자 조작 콩을 생각해 보자. 유전자 조작 콩은 아직 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없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다.

보기 14. 유전자 조작 콩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콩은 유해하다.

과거에는 보기 14가 오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기 14가 오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기 14와 상반되는 주장, 그러니까

보기 15. 유전자 조작 콩이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콩은 유해하지 않다.

가 무지에의 호소 오류이다.

하병학 교수는 보기 14와 보기 15와 같은 유형의 예들로 의료사고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가령 "운전시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으니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다"와 "자동차에 아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자동차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모두 '논리적으로 보면'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자동차 회사가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증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²²⁾ 그렇다면 그는 소비자 쪽이 무지에 호소하고 있는 보기 14 같은 논증이 '논리적으로는' 오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만약 그런 의도라면 '논리적'이라는 말을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쓰고 있다.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

22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230-2쪽. 그는 "이번 의료 사고에서 의사가 실수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고로 의사의 잘못은 아니다."와 "이번 의료 사고에서 의사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고로 의사의 잘못이다." 역시 둘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라면 논리적으로도 오류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보기 14는 논리적으로는 오류이지만 현실에서는 받아들이는 논증이 아니라,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아닌 것이다.

한편 제조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보기 15와 같이 발표했다고 해 보자. 그때 보기 15는 오류일 제한 조건 ①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오류가 아닐 것이다. 가능한 모든 지식과 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오랜 연구 끝에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유전자 조작 콩이 유해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위에서 제조물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옮겨가게 된 데에는 일반 소비자가 입증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자.

보기 16. 베트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3일 '고엽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내 한국군 작전 지역에 막대한 양의 고엽제를 뿌려 피해를 입혔다'며 라아무개씨 등 고엽제 피해자 1만7200여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사 등을 상대로 낸 5조여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나 그 2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이 고엽제 살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 국립과학보고서, 미국 공군연구 등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일반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량의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이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으므로 고엽제 피해자들이 질병을 유발할만큼 다량의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²³⁾

재판부는 고엽제와 각종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배경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그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사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조물책임법과 똑 같은 상황인데 왜 이 경우에는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가?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가 커졌기 때문에 입증의 부담의 전이가 가능했지만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힘이 정부나 제조사보다 훨씬 약하기 때

23 「한겨레」 2002년 5월 25일치.

문에 스스로 입증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언론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입증의 부담이 정부나 제조사로 넘어갈 것이다.

이처럼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형식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고려가 우선해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무지에 호소하는 경우 오류로 판정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존한다. 따라서 논증의 형식이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단박에 오류라고 판정하는 것은 금물이며 어떤 상황인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위에서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지지하는 철저하고 공정하며 충분한 입증 과정이 있었는가 살펴봐야 하고,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논증이 제기되는 상황이 중요한 보기를 검토해 보자. 데이머(T. Edward Damer)는 다음과 같은 보기를 오류로 제시하고 있다.

보기 17. 나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못 봤다. 그래서 그의 땅으로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²⁴⁾

이 논증이 정말로 오류일까? 나는 '그의 땅'이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의 땅이 누가 보더라도 사유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가령 집의 마당) 굳이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어도 그의 땅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거리, 산, 바닷가처럼 분명히 공유지인 경우나 또는 사유지인 것은 맞지만 사유지라는 것이 얼른 짐작이 안 되는 곳이라면 '출입 금지' 표지판이 없으면 지나가도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한 가지 보기를 더 생각해 보자.

보기 18. 우리 신문은 대통령 아들이 모기업에서 100억을 뇌물로 받았다고 한 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 동안 아무런 반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의혹은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

연애인의 스캔들을 보도한 신문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무지에 호소하

24 Damer, *Attacking Faulty Reasoning*, 137쪽.

고 있는 이 주장은 오류일까 아닐까?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발행 부수도 적고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신문이라면 대통령 아들은 그 기사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이 아주 큰 신문이라면 비리 의혹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보도 가치가 있는 소문에 대해서 "그 게 사실이라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겠니?"라는 말을 종종 한다. 이런 생각은

보기 19. 그것은 언론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류일까 아닐까?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사회에서는 오류가 아니다. 큰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모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시대와 지역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광주 지역 외의 시민들이 "광주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신문에 보도됐어야 하는데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류이다. "내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겠니?"라는 혼란 주장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주장은 앞에서 말한 '인식적 닫힘' 원리의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나'와 '그런 일'이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사안별로 성립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기 20.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으므로 나는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를 데이머는 오류라고 예를 들고 있지만²⁵⁾, 지원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그 대학이 답변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는 대학인지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또

보기 21. 기차 시간표에는 아침 7시발 광주행 기차는 안 나와 있다. 따라서 7시발 광주행 기차는 없다.

는 기차 시간표가 완벽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논증이다. 무지への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무지가 철저한 조사

25 Damer, *Attacking Faulty Reasoning*, 137-8쪽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가, 그리고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만 보고서 오류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²⁶⁾

26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은 논문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고 잘못된 곳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